

광주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가단5494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 고 C조합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0. 8. 11. 작성한 배당표에 기한 157,002,249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32,157,831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구상금 채권

○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6. 18.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한 2019. 6. 17.까지로 정하여, F이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채무를 원고보조참가인이 신용보증하고,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F이 원고보조참가인에 그 대위변제금과 손해금 등을 변제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F의 대표이사였던 A은 F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F은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9. 7. 20.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10. 25. G은행에게 86,502,3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A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 A은 피고에게 순천시 H 전 1,415㎡ 및 I 전 1,0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9. 5. 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9. 5. 8. 채권최고액 13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데 이어, ②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8. 13.자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9. 8. 13. 채권최고액을 162,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9. 9.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J에게 매각되었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0. 8. 11.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57,002,24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그런데 원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2020. 7. 20. 피고의 위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124,844,418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증액된 채권최고액에 따라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일부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다. A의 파산 및 원고의 소송수계

- 원고보조참가인은 2020. 7. 13. A을 상대로 가.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A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¹⁾ ○ 그런데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12. 11. 광주지방법원 2020하단5051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정한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양시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인권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파산채권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나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등 참조).

2) 또한 채무자의 일반재산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파산법상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도 없고,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다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배당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인 피고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게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여 향후 파산재단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A은 그러한 인식을 하고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A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가 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착오로 대출금보다 적게 채권최고액을 정하였고, 이러한

착오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위 대법원 2016다257572 판결 등 참조).

3) 갑 제13, 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할 당시 A의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았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2019. 5. 9. A에게 115,000,000원 및 3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는데, 2019.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15,000,000원의 120%에 해당하는 138,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②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된 것은 2019. 8. 13.로 A이 G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K이 관리하는 신용정보에 등재된 이후로서 피고는 A의 경제적 사정에 관하여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A은 2019. 5. 9.자 30,000,000원의 대출은 당초에는 신용대출이었는데, 2019. 8월경 피고의 요구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갑 제13, 15호증).4)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데,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157,002,24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증액된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배당금 32,157,831원(= 157,002,094원 - 124,844,418원)이 실제 지급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157,002,247원의 배당금지급채권 중 32,157,831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채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해림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21. 8. 23. A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